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

* 제 1 회 평북노회가 1912년 2월 15일 천전남교회에서 창립
* 제 73 회 평북노회가 1952년 3월 19일 부산평북노회당에서 재개
* 제 111 회 평북노회가 평북 평북 합동노회로 1972년 1월 13일 동인교회에서



THE PYUNGBUK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문서번호 : 예장평북 제218-113호

시행일자 : 2025. 7. 18.(금)

수 신 : 평북노회원

참 조 : 당회원

제 목 : 평북노회 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16회 정기노회로부터 수임받은 노회규칙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갖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청과정은 2단계로 실시합니다.

1. 온라인 공람

-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30일(수)

- 방법 : 노회 홈페이지에 게재, 의견제시(노회 이메일 mail@pbp.or.kr)

2. 공청회

- 일시 : 2025년 8월 4일(월) 오전10:30

- 장소 : 노회사무실

- 참석 : 시찰장 및 서기는 반드시 참석 요망

참가자 여비는 시찰회 자율 부담, 식사는 노회에서 제공함.

당일 준비를 위해 시찰회에서 참가자 명단 파악 요망함.

3. 별첨 : 규칙개정안 (개정 부분만 발췌하였음. 전문은 노회회의안 및 보고서 참고 요망)

끝.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
노회장 권호임 목사
규칙부장 안영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규칙개정(안) 신규대비표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규칙 : 00건 부분개정(1~4)
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교회설립 및 노회 가입에 대한 **규정** : 00건 부분개정(5~8)
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 00건 부분개정(9~11)
4.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규정** : 00건 부분개정(12~13)
5.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 00건(14)
6.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정** : **전면개정(15~21)**
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감사 **규정** : 00건 부분개정(22~23)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노회장 패 수여 **규정** : 00건 부분개정(24)

※ 보는 법

좌측(적색 취소선)	우측(청색 밑줄)
삭제	개정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규칙

현 행	개 정 안	비고1	비고2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규칙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규칙	부분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생략	제1조(명칭)	문구삽입	조변경
제2조 본회는 헌법에 의하여 평북노회에 속한 목사와 당회가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노회 안에 있는 소속 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정치) 제77조(노회의 직무)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구삽입	
제3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시에 둔다.	제3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원 및 총대) 1. 헌법에 의하여 평북노회에 속한 목사와 당회가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2. 은퇴한 전노회장 및 전부노회장, 은퇴목사, 자치단체장은 언권 회원이 된다.	문구삽입	조신설
제 2 장 임원 및 업무	제 2 장 임원 및 직무		
제4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생략) 2. 임원 선거는 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현행과 같다) 2. 임원 선거는 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내규에 따른다.	자구수정 문구삽입	조변경
제5조 본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제6조(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다)	문구삽입	조변경
제 3 장 부서 및 업무	제 3 장 부서 및 직무	자구수정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8부, 12위원회, 1국을 (생략) 제7조 각 부 및 위원회, 국, 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 12. 기소위원회 (생략) 13. 공천위원회 : 각 부서원은 각 시찰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천, 조정하며 본회의 공천을 위임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구성은 각 시찰의 시찰장과 서기 ~~및 직전노회서기로 하고~~ 위원회의 소집통지는 노회장이 ~~하며~~, 임원 조직까지의 사회는 ~~직전 노회~~ 서기가 하며, ~~원활한 공천을 위하여 임원은 목사 3인(위원장, 공천위원회서기, 직전노회서기)으로 한다.~~ 14. 시찰위원회 : 해당구역(생략) <del>7~9인으로</del> 구성한다. 15. 헌의위원회 ~ 21. 재판국(생략)	제7조(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이 8부, 12위원회, 1국을 (현행과 같다) 제8조(직무) 각 부 및 위원회, 국, 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 12. 기소위원회 (현행과 같다) 13. 공천위원회 : 각 부서원은 각 시찰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천, 조정하며 본회의 공천을 위임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구성은 각 시찰의 시찰장과 서기, <u>회계 및 노회 서기로 하고</u> 위원회의 소집통지는 노회장이 <u>하고</u>, 임원 조직까지의 사회는 <u>노회</u> 서기가 하며, <u>목사부노회장과 노회 서기를 당연직으로 하며, 공천위원장은 목사부노회장으로 한다. 공천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로 한다.</u> 14. 시찰위원회 : 해당구역 (현행과 같다) <u>9인으로 구성한다.</u> 15. 헌의위원회 ~ 21. 재판국 (현행과 같다)	문자삽입 문구삭제 및 문구수정	조변경 조변경
제 4 장 회 의 제8조 본 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전체회의 1) ~ 4) (생략) 2. 부회의 1) ~ 4) (생략) 제9조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체회의 임무 1) (생략) 2. 부회의 임무 1) ~ 4) (현행과 같음) 제 5 장 재 정	제 4 장 회 의 제9조(정기노회) 본 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전체회의 1) ~ 4) (현행과 같다) 2. 부회의 1) ~ 4) (현행과 같다) 제10조(직무) 본 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체회의 직무 1) (현행과 같다) 2. 부회의 직무 1) ~ 4) (현행과 같다) 제 5 장 재 정	문구삽입 문구수정	조변경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1조(재정) (현행과 같다) 제12조(회계년도) (현행과 같다)	문구삽입 문구삽입	조변경 조변경
제 6 장 부 칙			
제12조 (생략) 제13조 본회 회원의 각부서 배정은 1부 1위원회로 한다. 각 부서(위원회)장은 1, 2년 조에서 배정된 부서 중 한 부서만 맡는다. (법리 부서와 ~~한하여 예외로 한다~~) 1) ~ 2) (생략)	제13조(성찬) (현행과 같다) 제14조(회원) 본회 회원의 각부서 배정은 1부 1 위원회로 한다. 각 부서(위원회)장은 1, 2년 조에서 배정된 부서 중 한 부서만 맡는다. (법리 부서와 재정부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1) ~ 2) (현행과 같다) <u>3) 감사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소속(겸직)할 수 없다.</u>	문구삽입 문구삽입 항 신설	조변경 조변경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15조(이명) (현행과 같다) 제16조(당회록 검사) (현행과 같다) 제17조(총회보고) (현행과 같다) 제18조(규칙개정) (현행과 같다) 제19조(회칙미비) (현행과 같다) 제20조(회원의 의무) (현행과 같다)	문구삽입 문구삽입 문구삽입 문구삽입 문구삽입 문구삽입	조변경 조변경 조변경 조변경 조변경 조변경
~~세칙~~ ~~1. 본회의 총대 장로는 10월 노회 전에 각 당회가 선택, 시찰을 경유 보고 하며 개회 호명으로 회원권이 부여된다. 회원권은 1년간 유효하다.~~ ~~2. 모든 청원은 허락 후 두 노회 기간 중 시행치 않을 때는 무효로 한다.~~ ~~3. 신학 입학 추천자는 고서부에서 시취하고 목사 후보생의 계속 추천은 교육부 훈련부에서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시취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회원권) (현행과 같다) 제22조(청원) (현행과 같다) 제23조(목사후보생) (현행과 같다) 제24조(상회비미납) <u>상회비 미납교회의 청원과 기타 안건은 보류할 수 있고 상회비 미납교회에서 파송한 총대는 상회비 완납할 때까지 피선거권을 유보하기로 한다.(노회 임원, 각 부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총회 총대, 각 시찰회 임원)</u>	세칙삭제 문구삽입 문구삽입 문구삽입 문구삽입	조신설 조신설 조신설 조신설

개 정 일 (1987년 04월 25일 개 정) (1998년 04월 21일 개 정) (2001년 04월 18일 개 정) (2003년 10월 22일 개 정) (2006년 04월 18일 개 정) (2006년 10월 18일 개 정) (2007년 04월 18일 개 정) (2007년 10월 24일 개 정) (2009년 04월 22일 개 정) (2010년 04월 20일 개 정) (2010년 10월 18일 개 정) (2011년 10월 18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4년 04월 21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15년 10월 20일 개 정) (2017년 04월 17일 개 정) (2017년 10월 17일 개 정) (2019년 10월 21일 개 정) (2023년 04월 17일 개 정) (2025년 04월 21일 부분개정)	개 정 일 (1987년 04월 25일 개 정) (1998년 04월 21일 개 정) (2001년 04월 18일 개 정) (2003년 10월 22일 개 정) (2006년 04월 18일 개 정) (2006년 10월 18일 개 정) (2007년 04월 18일 개 정) (2007년 10월 24일 개 정) (2009년 04월 22일 개 정) (2010년 04월 20일 개 정) (2010년 10월 18일 개 정) (2011년 10월 18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4년 04월 21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15년 10월 20일 개 정) (2017년 04월 17일 개 정) (2017년 10월 17일 개 정) (2019년 10월 21일 개 정) (2023년 04월 17일 개 정) (2025년 04월 21일 부분개정) (2025년 00월 00일 부분개정)		
--	--	--	--

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교회 설립 및 노회 가입과 폐지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1	비고2
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교회설립 및 노회 가입에 ~~관한 세칙~~	2. 평북노회 교회 설립 및 노회 가입과 폐지에 관한 규정	명칭변경	
	제1조(명칭)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교회설립 및 노회 가입과 교회 폐지에 관한 규(세)칙』이라 칭한다.	문구삽입	조신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77조 제9항에 의거 노회에 가입이 허락된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설립 시부터 폐지 시까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내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신설	조신설
가. ~~교회가입(설립)에 대하여~~	제3조(교회설립)	문구삽입	조신설
1) 교회 ~~가입(설립)에 있어~~ (생략)	1. 교회 <u>설립에 있어</u> (현행과 같다)	문구삭제	
2) 본 노회 ~~설립 및 가입을~~ (생략) 예외로 한다.)	2. 본 노회에 <u>교회 설립 및</u> (현행과 같다) <u>와 탈북민교회는 예외로 한다.</u>	문구삽입	
3) (생략)	3. (현행과 같다)		
4) (생략)	4. (현행과 같다) <u>탈북민교회는 예외로 한다.</u>	문구삽입	또한, 삭제
5) 본 노회에 교회 ~~가입(설립)~~ 신청 후 지역 시찰위원회를 통해 한 회기 동안 지도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찰장의 지도육성 보고서를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하고, 정치부 ~~를~~ 통해 본회에서 정식으로 교회가입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본 노회에 교회 <u>설립</u> 신청 후 지역 시찰위원회를 통해 한 회기 동안 지도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찰장의 지도육성 보고서를 서면으로 노회에 제출하고, 정치부 ~~와~~ <u>재정부 시찰을</u> 통해 본회에서 정식으로 교회가입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구삽입	
	제4조(교회 설립 시 의무)	조신설	
	1. <u>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경우에는 임</u>		

나. 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1) (생략) 2) (생략)	<u>차인 란에 설립 교회명과 목사 성명을 병기하고 목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에 「추후 교회가 노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목사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를 기재한다.</u> <u>2.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설립 교회의 목사 개인인 경우에는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97조 제1항에 따라 노회 가입 후 1년 이내에 동 부동산의 소유주 명의를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u> <u>제5조(노회 가입 후 의무)</u> <u>1. 고유번호 신청: 교회는 노회 가입이 허락되는 즉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82-*****)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한다.</u> <u>2. 임대차 변경 계약: 교회가 교회 설립 시 목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를 목사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 계약하여야 한다.</u> <u>3.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u> <u>제6조(의무 불이행 시 제재) 교회가 본 규(세)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회는 교회의 의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교회의 노회 가입 허락을 취소한다.</u> <u>제7조(당회장 파송에 대하여)</u> <u>1. (현행과 같다)</u> <u>2. (현행과 같다)</u>	조신설 조신설 조신설	제7조로
---	---	----------------------------------	-------------

다. 전도목사 파송에 대하여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제4항, “전도목사 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2) 생략 3) 생략	<u>제8조(전도목사 파송에 대하여)</u>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제4항, “전도목사 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의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가 정한 바에 의한다. 2. (현행과 같다) 3. (현행과 같다)	조신설 자구수정	제8조로
라. 노회 상회비에 대하여 1) 교회 가입(설립)이 정식으로 노회에서 허락된 이후부터 소정의 상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생략)	<u>제9조(상회비)</u> 1. 교회 가입이 정식으로 노회에서 허락된 이후부터 소정의 상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종전과 같음)	문구삽입 문구수정	제9조로
	<u>제10조(교회의 폐지)</u> 1. 교회의 재산 귀속: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2. 교회 자산의 매각: 교회 자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할 경우 지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 시행규정에 의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교회폐지를 위한 공동의회는 노회임원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진행한다.	문구삽입 항신설	조신설
	<u>제11조(부칙)</u> 1. 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노회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시행: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신설	조신설

개정일 (2008년 04월 23일 개 정) (2011년 04월 11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개정일 (2008년 04월 23일 개 정) (2011년 04월 11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25년 00월 00일 부분개정)		
--	--	--	--

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1	비고2
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 제 1 장 ~~목~~————~~적~~ 제1조 (생략)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가. ~ 다. (생략) 제 3 장 선거 제3조 1) (생략) 2) 정. 부노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시 선출자가 없을 경우 2차 선출은 최다득표자 2명으로 하고 종다수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임직순으로 한다. 3) (생략) 4) (생략)	3. <u>평북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u> 제 1 장 <u>총</u>————<u>칙</u> 제1조(목적) (현행과 같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u>제2조(명칭)</u> <u>1.(위원)</u> (현행과 같다) <u>2.(임기)</u> (현행과 같다) <u>3.(기능과 권한)</u> (현행과 같다) <u>1). ~ 3).</u> (현행과 같다) 제 3 장 선거 <u>제3조(선출과방법)</u> 1. (현행과 같다) 2. 정. 부노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시 선출자가 없을 경우 2차 선출은 최다득표자 2명으로 하고 종다수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임직순으로 한다. <u>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는 투표 없이 추대할 수 있다.</u> 3. (현행과 같다) 4. (현행과 같다)	명칭변경 문구삽입 문구삽입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 정) (2009년 04월 22일 개 정) (2011년 04월 11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2년 10월 22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17년 04월 17일 개 정) (2018년 04월 17일 개 정) (2023년 04월 17일 일부개정)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 정) (2009년 04월 22일 개 정) (2011년 04월 11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2년 10월 22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17년 04월 17일 개 정) (2018년 04월 17일 개 정) (2023년 04월 17일 일부개정) <u>(2025년 00월 00일 일부개정)</u>		
--	---	--	--

4.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1	비고2
4.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사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생략) 제2조(목적) (생략) 제 2 장 위 원 및 임원 제3조(위원) (생략) 제4조(임원) (생략) 제 3 장 운 영 제5조(재정) (생략) 제6조(예·결산) (생략) 제7조(지원 대상 교회) (생략) 1) (1) (2) (생략) 2) (1) ~ (6) 생략) 3) (생략) 제8조(규제) (생략) 제9조(심사) 해당 교회 ~~당회장~~이 청원서와 전년도 연말 결산서(혹은 회계부 사	4. 평북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현행과 같다) 제2조(목적) (현행과 같다) 제 2 장 위 원 및 임원 제3조(위원) (현행과 같다) <u>(단, 지원받고 있는 교회는 위원이 될 수 없다)</u> 제4조(임원) (현행과 같다) 제 3 장 운 영 제5조(재정) (현행과 같다) 제6조(예·결산) (현행과 같다) 제7조(지원 대상 교회) (현행과 같다) 1) (1) (2) (현행과 같다) 2) (1) ~ (6) (현행과 같다) <u>(7) 교회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u> <u>(8) 본 위원회의 실사 시 의도적으로 실사를 받지 않는 교회</u> 3) (현행과 같다) 제8조(규제) 현행과 같다) 제9조(심사): 해당 교회 <u>담임목사</u>가 청원서와 전년도 연말 결산서(혹은 회계	명칭 변경 문구 삽입 항 삽입 항 삽입 문구 수정	

본)를 시찰을 경유하여 ~~익년 5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면 본회는 규정을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0조(생활비 지급) (생략) 제11조(지원 결정): 매년 10월 노회 때 본회에서 결정한다.	부 사본)와 동반목회지원위원가 요청한 서류를 시찰을 경유하여 익년 5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면 본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0조(생활비 지급) (현행과 같다) 제11조(지원 결정): 매년 10월 노회 때 본회에서 결정하되 본 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실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내용 보장	
제 4 장 부 칙 제12조 이 ~~새칙~~이 통과된 후 본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 생활비 지원은 본 위원회가 관장한다. 제13조(새칙개정): 본 ~~새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시행): 본 운영~~규칙~~은 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 4 장 부 칙 제12조(관장) 이 <u>내규</u>가 통과된 후 본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 생활비 지원은 본 위원회가 관장한다. 제13조(개정): 본 <u>내규</u>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시행): 본 운영 <u>내규</u>는 본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시행 한다.	문구 삽입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3년 04월 22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17년 04월 17일 개 정) (2017년 10월 17일 개 정) (2024년 10월 21일 일부개정)	개정일 (2007년 10월 24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3년 04월 22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17년 04월 17일 개 정) (2017년 10월 17일 개 정) (2024년 10월 21일 일부개정) <u>(2025년 00월 00일 일부개정)</u>	문구 수정	문구 수정

5. 평북노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1	비고2
5.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1. 지원대상 1) (생략) (가) ~ (라) (생략) 2) (생략) (가) ~ (마) (생략) 2. (생략) 1) ~ 5) (생략) 3. (생략)	5.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1. (현행과 같다) 1) (현행과 같다) (가) ~ (라) ((현행과 같다) 2) ((현행과 같다) (가) ~ (마) ((현행과 같다) 2. (현행과 같다) 1) ~ 5) ((현행과 같다)) 3. (현행과 같다)	개정내용 없음	

6.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비고	비고
6.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계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관리 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노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년도) (생략) 제4조(회계관행의 존중) ~~노회의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이라 함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경상수지라 함은 경상수지에서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3. 자본 수지라 함은 경상수지외에서 발행한 특정한 목적과 자산 부채기금의 거래를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말하며 경상운영에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을 유동자금이라 하고 그 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고정자금이라 한다. 5.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6.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회계 관리 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10월 정기노회에서 허락한 지출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노회 내 모든 수입과 지출의 회계 처리가 투명하며, 향후 북한교회 건립(재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계 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칙은 노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장부 및 감사, 재정 운영 등 모든 회계처리에 적용되며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현행과 같다)	명칭변경	

다. (회계 연도말일) 6. 전기 말이라 함은 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7. 당기 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8. 자금 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9. 자금 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10. 자금 수지 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 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1.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 계정을 말한다. 13. 주식이란 재무제표를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자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 하는 방법이다. 14. 주기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지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15. 경상 수지 차액이란 당기의 순자산 증감액을 말한다. (수입-비용) 제 2 장 예 산 제6조(자금 수지 예산의 편성) 재정부는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부 및 위원회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다. 제7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금 수지 예산의 결정) 각 부서 위원회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 정부는 예산안을 성안하여, 10월 정기노회에 상정하고, 자금 수지 예산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9조(추가 경정 예산) 예산 확정 후 생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 된 예산에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 예산의 편성은 정기노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자금 수지 예산의 내용)	제2장 예산 편성 및 집행 제5조(수지결산서 제출) 지교회는 노회 익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지교회 공동의회에 보고한 수지 결산서를 매년 봄 시찰회를 통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6조 (항목의 구분) 1. 수입항목: 전기이월액, 과년도미수금, 상회비, 현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2. 지출항목: 노회 회계가 지출하는 업무비와 각 부 및 위원회에서 지출하는 사업비로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절차) 1. 재 정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에 익년 예산편성
--	---

1. 예산의 내용은 예산 총칙과 자금 수지 예산으로 한다. 2. 예산 총칙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자금 수지 예산 규모 - 예산 편성 기본 차침 - 중요사업 계획 개요 -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3. 자금 수지 예산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목별 계상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집행의 내부 통제) 예산의 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를 해야한다. 제12조 (목적외 사용금지) 자금 지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예산의 정한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 (예산의 전용) 1.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때는 상호 전용 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고 정기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예산 집행자는 예산 집행 수지 계산서를(별표3호 서식) 작성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정 목적 사업예산): 공사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사업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지침을 시달한다. 2.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익년 수지예산서(안)을 재정부에 제출한다. 3. 재 정부는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익년 수지예산서(안)에 대하여 노회 임원회의와 협의하여 노회 익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편성한다. 4. 편성된 노회 익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10월 정기노회에 상정되어, 노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제8조(추가 경정 예산): 10월 정기노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의가 검토한 후에 재정부가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편성한다) 제9조(예산의 집행) 1.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장은 10월 정기노회에서 허락받은 예산의 범위와 지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의 집행자는 예산 지출시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편철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노회 회계감사에 대비한다. 3. 회의비 지급은 재정부가 정한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한다. 제10조(노회 주관 행사 사례비) 1. 노회 주관 행사(부, 위원회 포함)의 주관 부서 임원들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노회 주관 행사(부, 위원회 포함)의 강사에 대한 사례비는 최고 10만원으로 제한한다. 단, 시무 노회원이 아닌 경우(은퇴자, 외부 강사)는 주관 부서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전용) 1. 10월 정기노회에서 허락된 노회와 각 부 및 위원회별 지출항목대로 지출하여야 하고 각 부와 위원회 간 상호 예산의 전용은 할 수 없다. 2. 부서 내에서 동일 항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

제1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율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에 재정부가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율의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10월 정기노회 시에 지출을 허락받은 항목이 아니므로 그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에 재정부의 허락 하에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목적현금의 사용 제한) 정기노회 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현금은 향후 북한교회 건립에 사용될 목적현금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출할 수 없고, 계속 정기에금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계 제17조 (일반원칙): 회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3.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신실한 것이라야 한다. 4.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5. 회계 처리 방법 및 기준과 과목 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6.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7. 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기간별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제3장 회계 장부 및 감사 제14조(회계 기록 및 보관) 1. 회계 장부는 지출증빙서류에 의거 정확하게 기록하며, 모든 재정 관련 서류(영수증, 통장 사본, 결산 보고서 등)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한다. 2. 노회 회계와 각 부 및 위원회는 디모데교회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5조(업무 인수·인계) 노회 모든 부서의 회계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 노회 회계, 각 부 및 위원회의 회계는 노회 감사기준에 의거 노회 감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6개월마다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감사	

8. 교회 수익 사업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제18조 (재무제표) 1. 재무제표는 예산 수지 계산서 또는 자금수지 계산서(별표4호 서식) 대차 대차표(제5호서식) 및 등 부속 명세서(제7호 서식)를 말한다. 2.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장부 및 전표와 결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부 : 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 원장 2. 전표 : 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전표 3. 증빙 : 회계 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 증거자료가 된다. 4.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개정표로 전기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5. 주계표를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 6.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월말 및 기말로 마감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20조 (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별표 4호 서식의 자금 수지 계산서 과목과 별표 5호 서식의 대차대조표 과목과 같다. 제21조 (자금 수지 계산 방법) 1. 자금 수지 계산은 자금 수입의 부와 자금 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 과목 별로 계산하여 자금 수입과 자금 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 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 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으로 계산하고 전기 말 선수금 과 기말미수금에 가감한다. 자금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지출과 전기 말 선급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가감한다. 제22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 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부채는 유동 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관행에	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운영 제17조(미래준비금의 특별회계 관리) 노회 회계는 예산의 차기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잉여 예산액을 통일을 대비 미래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동 준비금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적립하고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 제18조(현금 계수) 정기노회 시 하나님께 드려진 현금의 계수는 회계와 부회계 등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계수를 수행하며, 계수와 동시에 집계표를 작성하고 확인한다. 제19조 (징계 및 처벌) 노회 재정 운영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는 변상하여야 하며, 중대한 재정 비리는 노회 규율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20조(규칙의 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채택과 동시에 시행한다.
--	---

따른다. 2. 대차대조표의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집기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 (대손상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노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 상각 할 수 있다. 제25조 (감가상각): 노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 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제26조 (각종 적립금의 적립) 1. 노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제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자금 수지 계산서의 지출의 부에 지출로 계상하고 퇴직 급여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노회는 제정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자금 수지 계산서 수입의 부에 당해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기본금의 증가와 감소) 1. 노회는 고정 자산 취득 또는 투자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자산 가액 상당액을 해당 자산 및 기본금의 증가로 계산하다. 제 4 장 계 약 제28조 (계약): 총회회계 규정 제 7장을 준용한다. 제 5 장 감 사 제29조 (감사): 노회 감사기준에 따른다.	
---	--

부 칙 1. 이 규정은 정기 노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개정일 2001년 10월 23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23년 04월 17일 부분개정	개정일 2001년 10월 23일 개 정 2012년 04월 17일 개 정 2015년 04월 21일 개 정 2023년 04월 17일 부분개정 2025년 00월 00일 전면개정
---	---

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감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1	비고2
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감사기준 제1조(명칭) 이 기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직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분) (생략) 1.~4. (생략) 제3조(감사실시)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 감사 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7일전까지~~ 통보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현지 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을 감사실시 ~~5일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3. (생략) 제5조(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 4. (생략) 5. 기타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 상황 제6조(감사인의 의무) (생략) 1. ~ 3. (생략)	7. 평북노회 감사 규정 제1조(명칭) 이 기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u>규칙 제7조 10항 규정에 의하여</u> 감사직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분) (현행과 같다) 1. ~ 4. (현행과 같다) 제3조(감사실시)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시기, 감사 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 감사 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u>30일 전까지</u> 통보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현지 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을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2회기 동안 실시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u>) 2. 3. (현행과 같다) 제5조(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 4. (현행과 같다) <u>5. 기타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 상황 2회기 동안 실시한 부서 업무인수·인계서 작성</u> 제6조(감사인의 의무) (현행과 같다) 1. ~ 3. (현행과 같다)	명칭변경 법령수정 문구수정 문구수정 문구삽입	

제7조(감사의 요구사항) (생략) 1. ~ 5. (생략) 제8조(감사 관련 서류) (생략) 1. ~ 3. (생략) 제9조(시정 요구 등) 1. (생략) 가. (생략)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다. 관계 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이를 확인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생략) 제11조(재심청구) (생략) 1. ~ 2. (생략)	제7조(감사의 요구사항) (현행과 같다) 1. ~ 5. (현행과 같다) 제8조(감사 관련 서류) (현행과 같다) 1. ~ 3. (현행과 같다) 제9조(시정 요구 등) 1. (현행과 같다) 가. (현행과 같다)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u>해당 부서에 시정이행요구서 문서발송 및 시정이행 결과보고서 문서 받음</u>) 다. 관계 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u>시정이행결과 보고서</u>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u>감사는</u>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이를 확인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현행과 같다) 제11조(재심청구) (현행과 같다) 1. ~ 2. (현행과 같다)	문구삽입 문구삽입 오타수정	
--	---	-------------------------------------	--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노회장 패 수여 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1	비고2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노회장 패 수여 기준 제1조 목적 (생략) 제2조 종류 및 대상 (생략) 1. (생략) 1) ~ 2) (생략) 2. (생략) 1) ~ 4) (1)~(3) (생략) 3. (생략) 1)~ 3) (생략) 4. 5. (생략) 7.8.(생략) 제3조 ~~공로목사 패 추대~~(심의 및 수여 절차) 1. (생략) 1) ~ 4) (생략) 2. (생략) 1) ~ 2) (생략) 3. (생략) 개정일 (2023년 04월 17일 개정)	8. <u>노회장 패 수여 기준 규정</u> <u>제1조(목적)</u> (현행과 같다) <u>제2조(종류 및 대상)</u> (현행과 같다) 1. (현행과 같다) 1) ~ 2) (현행과 같다) 2. (현행과 같다) 1) ~ 4) (1)~(3) (현행과 같다) 3. (현행과 같다) 1)~ 3) (현행과 같다) 4. 5. (현행과 같다) <u>6. 목사 은퇴패 대상</u> <u>목사 은퇴하는 자에게</u> 7.8.(현행과 같다) <u>제3조(공로목사 추대) 공로목사 패 추대(심의 및 수여 절차)</u> 1. (현행과 같다) 1) ~ 4) (현행과 같다) 2. (현행과 같다) 1) ~ 2) (현행과 같다) 3. (현행과 같다) 개정일 (2023년 04월 17일 개정) <u>(2025년 00월 00일 일부개정)</u>	명칭변경	
		항 신설 문구삽입	
		문구삽입	